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16

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임호선·정준호·김동아

문대림 • 복기왕 • 이연희

안태준 • 고민정 • 권칠승

임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「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」(2021.4.2)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·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구성·운영을 규정하고 있음.

통합사례회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·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,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, 최근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며, 그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 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2조제6항).

또한,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7제1항).

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22조제6항).
- 나.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의7제1항).

다.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자 함(안 제71호제3항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6(통합사례회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현장조치 시 전문가 의견을 실시간으로 구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(이하 "통합사례회의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통합사례회의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(이하 이조에서 "전담의료기관"이라 한다)이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1개소이상 되도록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71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제29조의7제 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2조의6(통합사례회의) ① 시ㆍ
	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
	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
	전한 보호를 위하여 현장조치
	시 전문가 의견을 실시간으로
	구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
	(이하 "통합사례회의"라 한다)
	<u>를 둔다.</u>
	②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사
	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
	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
	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
	<u>된다.</u>
	③ 통합사례회의의 구성・운영
	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
	<u>부렁으로 정한다.</u>
제29조의7(아동학대 전담의료기	제29조의7(아동학대 전담의료기
관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,	관의 지정) ① 지방자치단체는
시 · 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 · 구	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
<u>청장은 국·공립병원, 보건소</u>	료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전담의
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	료기관"이라 한다)이 시·도 및
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	시・군・구에 1개소 이상 되도
(이하 이 조에서 "전담의료기	록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

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 략) 제71조(벌칙) ①·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. ~ 7. (생략)

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
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시ㆍ
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
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
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
의 시・군・구를 통합하여 하나
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.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1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
<u> </u>

3 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하
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
이익을 취한 사람

3. ~ 7. (현행과 같음)